의안번호 제257호

발 의 연 월 일 2024. 3. 4.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강선구 의원 외 4인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

(강선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257호

발의 연월일: 2024년 3월 4일 발 의 자: 강선구, 김영진, 이정순

장순관, 박중수 의원(5인)

1. 제안이유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어촌민 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 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안 제4조)
- 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5조)
- 라.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안 제6조)
- 마.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안 제7조)
- 바. 지도 · 감독 등(안 제8조)
- 사. 사업장 폐쇄 등(안 제9조)
- 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13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6조~제9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건축법」 제3조
-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2024. 3. 5. ~ 3. 11. [7일간]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2】
 - 4) 성별영향 평가 : 【붙임 3】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

- 제1조(목적) 예산군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 다.
 -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장이 예산군 에 위치한 사업을 말한다.
 -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예산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 2.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 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 1. 예산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법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산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④ 군수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군수가 법 제86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⑥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제5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86조의2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제9항에 따라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군수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법 제86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법 제86조의3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법 제86조의4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법 제88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 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장 폐쇄 등) ① 군수는 법 제89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법 제89조제1항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법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4.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7.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 ③ 법 제86조의4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 ④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⑤ 군수는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법 제90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89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2. 생략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 · 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 하. 생략
 - 4. ~ 7. 생략
- □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

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 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 받은 자는 제외한다)
 -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 1.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 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하는 자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 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

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 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 육을 받아야 한다.
-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 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 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 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8조(지도·감독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 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 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 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 · 양수한 경우
-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수 없다.
- ③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 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 2.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9750호, 2024. 10. 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 · 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 건축법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단독주택

【붙임 2】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주요내용)

O 소요예산 판단을 위해 비용산출이 필요하나 사업 내용 및 사업량 파악이 어려워 집행기관에서 별도 비용추계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O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별도 산정하기로 하고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O 집행기관 의견조회 시 비용산정 요청, 별도산정

4. 작성자 : 강선구 의원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예산005			
정 책 명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			
	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소관부서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이종구	전화번호	041-339-707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2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사항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가족지원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미/041-339-7912)

의회사무과장 귀하